| 산업통상자원부 | 보 도 자 료 |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|
|---|---|---|

| 보도 일시 | 2022. 10. 26.(수) 11:00 < 10.27.(목) 조간 > | 배포 일시 | 2022. 10. 26.(수) |
|---|---|---|---|
| 담당 부서 | 투자정책관실 해외투자과 | 책임자 | 과 장 안성호 (044-203-409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이경진 (044-203-4095) |

#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조정결과 발표

## - 한국NCP, 피신청인 삼성중공업에 기업책임경영 이행 등 권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**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***와 관련한 **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**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**조정결과**(최종성명서)**를 발표**('22.10.26)함

* (사고경위) '17.5.1.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상구조물 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이 부딪쳐 작업자 31명(사망 6명, 부상 25명) 인명 피해 발생

○ 산업부는 **10.26(수)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**하여 이 사건의 피신청인 삼성중공업에 대해 **산업안전사고 예방 등**을 위해 **기업책임경영을 이행할 것을 권고***하는 **최종성명서를 채택**하고 **사건을 종결**함

* (주요 권고사항) ❶추가피해자 확인시 구제조치, ❷산업안전사고에 대한 구제조치방안 수립, ❸旣수립한 사고방지대책의 성실한 이행, ❹6개월후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제출 등

◈ **(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)** 다국적기업의 노사·인권·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기업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제정(1976년)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

- 가이드라인 위반의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국가별 이행기구(NCP)에 이의신청을 제기, NCP는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정 등을 통해 사건 처리

◈ **(NCP, National Contact Point)** OECD 가입국(38개), 비가입국 중 가이드라인 수락 국가(12개) 등 총 50개국에 설치, 한국은 '01년에 설치

**※ 한국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**

신청 접수 ⇒ 1차 평가 (90일내) [● 실익없음(종료) / ● 추가절차] ⇒ 조정 위원회 ⇒ [(합의) 결과 공표(1년이내) / (미합의) 종료(최종성명서) ● 양측 주장 + 권고(필요시)] ⇒ OECD 통보

□ 이 사건 이의신청인은 **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발생한 크레인 사고**와 관련, 삼성중공업 등 피신청인이 **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**했음을 이유로 **이의신청을 제기**('19.3.29)하였음

**<참고>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이의신청 사건 개요**

▸ 이의신청인 :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(4개 단체), 기업과인권네트워크

▸ 피신청인 : 삼성중공업(韓), Technip FMC(프랑스), Total(프랑스), Equinor(노르웨이)

* 삼성중공업 이외 피신청인에 대한 사건처리는 노르웨이 NCP에서 진행중

▸ 이의제기내용 : 크레인 충돌사고 예방대책 미수립, 관리자들의 작업지휘 소홀, 충분한 신호수 미배치 및 신호수의 감시소홀

▸ 피신청인(삼성중공업) 입장

- 운반안전절차서, 작업표준절차서 등에 사고예방대책이 포함되어 있음
- 소속 반장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
- 신호수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아니며, 작업자 업무과실이 사고원인

○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당사자간 의견교환 및 **4차례에 걸친 조정절차* 등을 진행**하였으나 양측이 **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** 위원회 차원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**사건을 종결함**

* (조정경과) 1차('20.8.19), 2차('20.9.17), 3차('22.3.4), 4차('22.5.18)

□ **정종영 투자정책관**(한국NCP 위원장)은 한국NCP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**성실하게 조정절차에 참여**한 것을 **높이 평가**하였음

○ 더불어, 한국NCP 조정절차 참여를 통해 이의신청인, 피신청인, 이해관계자 등이 **기업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**가 되었을 것이라 강조하였음

○ 그리고, 최종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피신청인인 삼성중공업 측이 **한국NCP의 권고사항**을 **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**하였음

※ 동 사건의 최종성명서는 한국NCP 홈페이지(www.ncp.or.kr) 게시 예정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**붙임1** **2022년 제3차 NCP위원회 개최개요**

## □ 회의개요

○ 일시 : ‘22. 10. 26(수) 16:30~17:30

○ 장소 :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18층 5심리실

○ 참석 : NCP위원장(산업부 투자정책관), NCP위원, 사무국장 등

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○ 회의안건

-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 최종평가

## □ NCP 위원 명단

| 구분 | 소속 및 직책 | 성명 | 임기 |
|---|---|---|---|
| **위원장** | **산업통상자원부<br>투자정책관** | **정종영** | **당연직** |
| 정부위원<br>(간사) | 산업통상자원부<br>해외투자과장 | 안성호 | 〃 |
| 정부위원 | 고용노동부<br>개발협력지원팀장 | 김순재 | 〃 |
| 정부위원 | 환경부<br>국제협력과장 | 정경화 | 〃 |
| 민간위원 | 산업기술대<br>교수 | 이상희 | ‘20.2.27 ~ ’23.2.26 |
| 민간위원 | 한국폴리텍대학<br>서울강서캠퍼스학장 | 여상태 | ‘21.6.11 ~ ’24.6.10 |
| 민간위원 | 법무법인 해마루<br>변호사 | 오재창 | ‘21.6.11 ~ ’24.6.10 |
| 민간위원 | 법률사무소 성의<br>변호사 | 장진영 | ‘20.5.14 ~ ’23.5.13 |

**붙임2** **한국 NCP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**

* 자료: 산업부 공고 및 OECD가이드라인 PartII 이행절차

**이의신청 접수**

이의신청서 접수

⬇

접수 여부 결정 및 통보 *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내

⬇

이해당사자 의견청취

⬇

**1차 평가**

1차 평가 *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90일내

- 관련당사자의 신원 및 이해관계
- 쟁점의 사실관계
- 기업활동과의 연관성
- 쟁점 검토가 가이드라인 목적 및 효용성에 기여하는지 여부 등

⬇

추가 절차 진행여부 결정 및 통보, 홈페이지 등에 공표 ➡ 추가절차 진행 실익없는 경우 종료, 공표

⬇

**조정절차**

조정 사건으로 접수

⬇

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절차 진행 * 이의신청 접수 후 1년이내 종결

⬇

**처리결과 공표**

| 합의 | 미합의 |
|---|---|
| · 이의신청내용<br>· 조정절차<br>· 합의내용 및 시기 | · 이의신청내용<br>· 조정절차<br>· 각 당사자 주장<br>· (필요) 권고 |

* 조정절차 종결 후 30일이내

⬇

관련 주무관청에 통보
OECD투자위원회에 보고